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5. 7.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심의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에서 심의를 해왔는바 「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여성발전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변경(안 제4조의2)
  - 기존 : 사하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
  - 변경 :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-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삭제(안 제5조 내지 제8조)
- 기타 일부 자구 수정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“사하구”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사하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구청장”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운용심의)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여성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.</p> <p>1. 사하구의 출연금</p> <p>2. 및 3. (생략)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의 본예산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----- -----.</p> <p>1.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"사하구"라 한다)의 출연금</p> <p>2. 및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---.</p> <p><u>제4조의2(기금의 운용심의)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</u></p> <p><u>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p><u>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기타 여성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기타 여성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부구청장, 사회복지사무소장, 복지사업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</u></li> <li><u>2. 학계,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.</u></li> </ol> <p><u>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⑤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⑥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여성아동팀장이 간사가 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.</u>  <u>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<u>제7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u>  <u>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</u>  <u>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<u>제8조(회의참석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